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7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3-710호 :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10
제2023-7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1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2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된 갈등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갈등영향분석(안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안 제7조~제9조)
- 심의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10조~제11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합의결과문 이행 등(안 제12조~제14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비밀유지(안 제15조~제17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안 제18조~제19조)
- 수당지급 및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20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33, 팩스 : 02-3396-9019, email : one020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의 예방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6. 제19조에 따른 갈등관리실태의 평가·활용·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과 분야를 고려하여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반드시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 4. 시민단체 대표
-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⑨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와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조정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마을갈등조정지원단) ① 구청장은 갈등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지원을 위한 상담·의견청취, 사례조사 및 중재 활동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련한 활동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지원단 단원,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갈등 업무추진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제16조에 의한 지원단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공 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10호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토지이용계획 상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	-	증) 10,818.1	10,818.1	-

■ 지정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	• 구역 신설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화된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2.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추정 지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지분율산정방식 분양대상자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신축건축물시설편가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물비(신축건축물시설편가액)
---------------	---

추정 지분율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지분율 : 100% 분양대상자투자금액 ÷ 총사업비 = (310,885,149 + 96,555,988 + 812,460,636) ÷ 1,219,901,773 = 100% = 1 총 사업비(총후 평가금액 추산액) : 1,219,901,773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409,059,406 - 신축건축물시설 평가액 : 810,842,367 대지조성비 : 1,618,269 총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 310,885,149 총 대지평가차액 : 409,059,406 - 1,618,269 - 310,885,149 = 96,555,988 비용부담액 : 1,618,269 + 810,842,367 = 812,460,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지분율 관련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총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의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총후평가)'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
---------------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임의 산정 (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500,000(가정)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500,000 ÷ 310,885,149 ≈ 0.161%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96,555,988 × 0.161% ≈ 155,455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500,000+155,455=655,455 (A)의 지분율 = 655,455 ÷ 1,219,901,773 ≈ 0.054%
----------------------	--

추정분담금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5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th> <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th> <th>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th> <th>개별 분담금 (천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업무시설</td> <td>전용 33㎡</td> <td>77,410</td> <td>774,100</td> <td>655,455</td> <td>지급</td> </tr> <tr> <td>근린생활 시설</td> <td>지상1층(전용 33㎡)</td> <td>77,816</td> <td>778,160</td> <td>655,455</td> <td>지급</td> </tr> <tr> <td></td> <td>지하1층(전용 33㎡)</td> <td>38,908</td> <td>389,080</td> <td>655,455</td> <td>- 266,375 수령</td> </tr> </tbody> </table>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시설	전용 33㎡	77,410	774,100	655,455	지급	근린생활 시설	지상1층(전용 33㎡)	77,816	778,160	655,455	지급		지하1층(전용 33㎡)	38,908	389,080	655,455	- 266,375 수령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시설	전용 33㎡	77,410	774,100	655,455	지급																				
근린생활 시설	지상1층(전용 33㎡)	77,816	778,160	655,455	지급																				
	지하1층(전용 33㎡)	38,908	389,080	655,455	- 266,375 수령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신설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10,818.1	10,818.1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2,675.4	2,675.4	24.7	-
	도로	-	증) 2,134.5	2,134.5	19.7	-
	공원	-	증) 540.9	540.9	5.0	-
획지(대지)	소계	-	증) 8,142.7	8,142.7	75.3	-
	획지(대지)	-	증) 8,142.7	8,142.7	75.3	-

■ 변경사유 : 노후화된 광희동1가 303-1일원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818.1	-	10,818.1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818.1	-	10,818.1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297 (178)	쌍림동 34-4	을지로6가 77-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184	6	국지 도로	40	광희동1가 46-1	광희동1가 38-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변경	소로	1	184	10	국지 도로	45	''	''	일반 도로	''	연장 및 폭원에 따른 변경
기정	소로	3	50	6	국지 도로	194	광희동1가 11	을지로6가 58-5	일반 도로	건고 (1963.07.01.)	대호1길
변경	소로	1	50	12	국지 도로	212 (134)	''	을지로6가 58-5	일반 도로	''	연장 및 폭원에 따른 변경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A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97(178)m	• 주변 도로와의 연속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기존 현황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소로 3-184	소로 1-184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6m → 10m - 연장 : 40m → 45m	• 사업 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 폭원 확장
소로 3-50	소로 1-50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6m → 12m - 연장 : 194m → 12(134)m	• 사업 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기존 현황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도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도로 선형 일부 변경

■ 지하도로 : 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신설	⑦	도로	지하도로	광희동1가 278번지 일대	77.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⑦	도로	지하도로	• 지하도로 (보도) 신설	•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정비구역 내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도로(보도) 설치를 통해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

■ 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⑤	5호선 본선	본선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	47,400	-	건고 제695호 (1990.10.19)

나. 공간시설 : 신설

■ 공원 : 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공원	소공원	쌍림동 34-5 일원	-	증) 540.9	540.9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 공원 신설 - 위치 : 쌍림동 34-5 일원 - 면적 : 540.9㎡	• 부족한 녹지 및 공지를 확보하며,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신설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 신설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시행구역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순부담율 (%)	비 고
신설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818.1	8,142.7	2,675.4	321.2	901.7	1,452.5 (토지 : 공원, 도로)	15.1%	-

※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 기반시설 내 기존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 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합 계		2,675.4	-
	쌍림동 34-5 일원	공원	540.9	토지 기부채납
	쌍림동 34-4 일원	도로	2,134.5	토지 기부채납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없음

6.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신설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818.1	획지	8,142.7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	76	-	-	76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신설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818.1	획지	8,142.7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	업무	50 이하	1,138.3 이하	156.0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 용적률 : ①+②+③ = 1,138.3%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0%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계획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 설치 시	정률부여 (2.0)	최대 100.0%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개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시	정량부여	최대 30.0%
	공익시설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1/2이상 초과설치시	정량부여	최대 20.0%
	저층부 개방	저층부 녹지와 연계되는 저층부 (최소1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시	정률부여 (3.0)	최대 50.0%	200.0% 적용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3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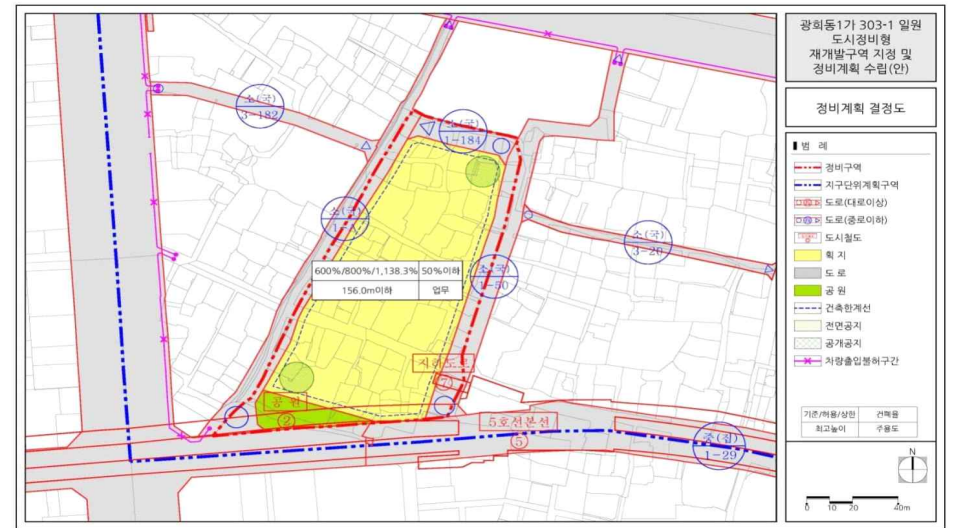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도로, 공원)	•산정식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 800%×{(1.3×1×토지(2,675.4㎡÷1,222.9㎡)÷8,142.7㎡)} = 185.5%
공개공지 초과조성	•산정식 = 허용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 800%×(1,555.1㎡÷8,142.7㎡) = 152.8%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 최고높이 : ①+② = 156.0m 이하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 149.3m •산정식 = 적정건폐율50%×(기준높이+20m)÷(80%-개방형녹지율) = 50%×(기준높이 70m+20m)÷(80%-49.86%) = 149.3m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량 : 6.7m •산정식 = 기준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 70m×{(1,555.1㎡×1/2)÷8,142.7㎡} = 6.7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3m) : 간선가로변, 이면부
대지내 공지 계획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개방형 녹지계획	○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
저층부 개방공간 계획	○ 일반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
	○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조성

■ 변경사유 :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개방형 녹지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높이 완화 적용

8. 정비계획 결정(안)도

<정비계획 결정도>



※ 등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Ⅲ. 기 타

- 1) 공람기간 : 2023. 8. 2. ~ 2023. 9. 1.(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3)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14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지정취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중구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지정일자: 2023. 11. 1.
- 3. 금연 구역 지정 내용
 - 금연구역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한국금융사박물관 사잇길 금연구역
 -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3 (태평로1가 62-8)
 - 금연구역 지정 범위: 연장길이 48m



